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
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672호, '23.8.16. 공포, '24. 2.17. 시행)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(안 제11조 제3항 및 4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생략

다. 향후계획 : 생략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(2023. 12. 19. ~ 2024. 1. 18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 비대상
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(시설물 설치 사업은 제외한다. 이하 “공모사업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의 세부 시행계획, 사업 선정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11조(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공모방식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(시설물 설치사업은 제외한다. 이하 “공모사업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u> <u>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의 세부 시행계획, 사업 선정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/u> 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342